

새 법령 소개

5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 ✓ 라면, 햄버거 등 제조·가공식품에 나트륨함량 비교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게 됩니다. (「식품위생법」)
- ✓ 피자·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게 됩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재산 등에 피해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주민등록변경 위원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등록법」)

5 2017. Ma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근로자의날	2	3 석가탄신일	4	5 어린이날·입하	6
7	8 어버이날	9 19대 대통령 선거	10 (4.15) 유권자의날	11	12	13
14	15 스승의날 가정의날 성년의날	16	17	18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19 발명의날	20 세계인의날
21 소만·부부의날	22	23	24	25 방재의날	26 (5.1)	27
28	29	30 단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법」	31 바다의날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2월에 총 4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라면, 햄버거 등 제조 가공식품에 나트륨함량 비교정보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게 됩니다.

「식품위생법」 5월 19일 시행

- 소비자가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알기 쉽도록 식품군별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도입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하여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음식점의 위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함

-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하도록 함(제11조의2항 신설).
-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식품접객업의 위생등급 평가 기준에 따라 위생등급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47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영업자는 위생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 그것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함(제47조의2제4항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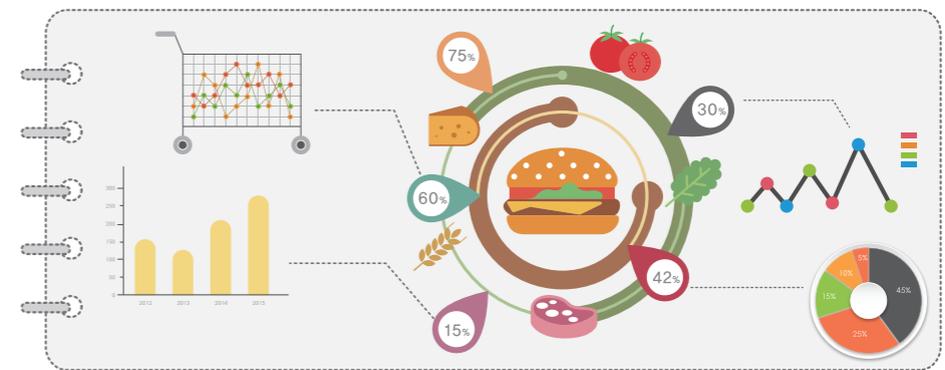


「식품위생법」 5월 19일 시행



라면 등 제조·가공식품에 나트륨함량 비교정보를 표시하게 됩니다.

- 동일·유사식품과 비교한 표준함량치 대비 비율(100% 이상이면 나트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을 의미)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모양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피자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게 됩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5월 30일 시행

-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은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하는 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안전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을 실현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그 영업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서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5월 30일 시행



햄버거·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게 됩니다.

- 햄버거, 피자, 빵,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이나 제과점(점포수 100개 이상인 가맹점의 영업소)은 해당 식품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메뉴판 등에 표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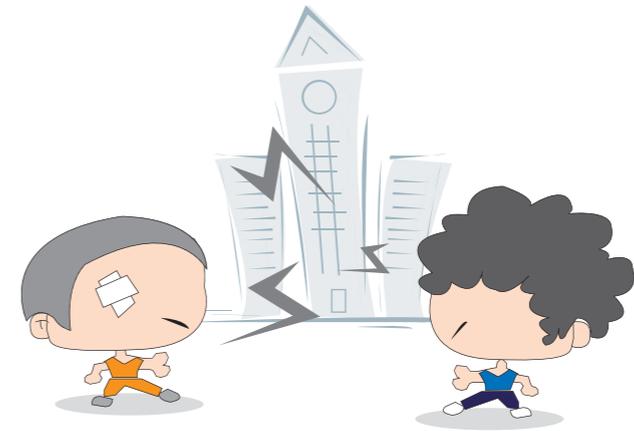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5월 30일 시행

●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택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자격, 결격사유 및 신분보장, 조정위원의 제척, 조정의 신청 대상 및 절차, 처리기간, 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4조부터 제29조까지 신설).

(참고) 조정위원회 조정사항(제14조제2항)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



「주택임대차보호법」 5월 30일 시행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주택임대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됩니다.

- 보증금 반환 등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또는 시·도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재산 등에 피해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등록법」 5월 30일 시행

-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행정위원회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4제1항 신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4제2항 및 제3항 신설).



5월 시행법령 목록 (2017. 4. 19.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886호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5. 1.
2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05호	국토교통부	5. 1.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81호	고용노동부	5. 1.
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14호	행정자치부	5. 1.
5	공직선거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규칙	제458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9.
6	공직선거법	법률	제14556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9.
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법률	제14554호	기획재정부	5. 9.
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08호	행정자치부	5. 10.
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6호	문화체육관광부	5. 15.
10	식품위생법	법률	제1333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5. 19.
1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23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5. 19.
12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21호	식품의약품안전처	5. 19.
13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97호	식품의약품안전처	5. 19.
14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행정자치부령	제70호	행정자치부	5. 20.
15	경찰대학 설치법	법률	제14265호	경찰청	5. 30.
16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899호	경찰청, 행정자치부	5. 30.
17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201호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5. 30.
18	국립공원관리공단법	법률	제14226호	환경부	5. 30.
19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법률	제14248호	국민안전처	5. 30.
20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법률	제14240호	해양수산부	5. 30.
21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206호	해양수산부	5. 30.
22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03호	해양수산부	5. 30.
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4215호	보건복지부	5. 30.
2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07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5. 30.
2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27호	해양수산부, 환경부	5. 30.
26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43호	해양수산부	5. 30.
27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17호	보건복지부	5. 30.
2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14263호	식품의약품안전처	5. 30.
2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863호	식품의약품안전처	5. 30.
3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18호	보건복지부	5. 30.
31	자연공원법	법률	제14228호	환경부	5. 30.
32	점자법	법률	제14205호	문화체육관광부	5. 30.
3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24호	보건복지부	5. 30.
34	주민등록법	법률	제14191호	행정자치부	5. 30.
35	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09호	행정자치부	5. 30.
36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4175호	법무부	5. 30.
37	평생교육법	법률	제14160호	교육부	5. 30.
38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4225호	보건복지부	5. 30.
39	화장품법	법률	제14264호	식품의약품안전처	5. 30.
40	화장품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357호	식품의약품안전처	5. 30.
41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4231호	환경부	5. 30.
42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14232호	환경부	5. 30.
4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37호	환경부	5. 30.

위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